

실업급여 반환명령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

고용보험법 제61조, 제62조,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~제106조에 의거 윤**에게 ‘실업급여 반환명령 결정 통지서’를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·폐문부재 및 주거불명(행정주소)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.

2026. 7. 27.

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시청장



1. 건 명 : 실업급여 반환명령 결정 통지 공시송달
2. 근 거 :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, 고용보험법 제61조, 제62조,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~제106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: 불임의 공시송달 명단 참조
4. 공고기간 : 2026. 7. 29. ~ 2026. 8. 12. (15일간)
5. 의견제출안내 :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시청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팀(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37, 7층(분평동 BYC빌딩))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 0503-8803-0667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6. 기타사항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시청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팀 김예주(TEL 043-229-0762)에게 연락 바랍니다.

실업급여 반환명령 결정 통지 관련 공시송달 명단

(공고기간: 2026. 7. 29. ~ 2026. 8. 12.)

연 번	성명	생년월일	주소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송달불능 사유
1	윤**	'79.1.18.	충청북도 영동군·읍 눈어치로 (이하생략)	실업급여 지급제한, 부정수급액 등 반환명령 결정통지서	실업급여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결정 통지 안내 -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사실 미신고 (지급제한기간: 2024. 9. 20. ~ 2024. 12. 18.) - 부정수급 반환명령액: 3,533,820원	수취인 및 폐문부재 등

2026. 7. 27.

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장

